-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570호

2021. 03. 16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2. 26. 양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 3. 4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1. 3. 16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재정국장)

가. 제안이유

국내·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"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"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고문, 수석부회장 직 추가(제5조)

-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 부여
- 역대 회장 고문으로 추대

○ 임원 임기 연장 : 1년 → 2년(제6조)

○ 정기총회 횟수 조정 : 상·하반기(연 2회) → 연 1회(제7조)

○ 사무국 지위 승격 : 사무국 → 사무처(제14 ~ 15조)

○ 분과위원회 신설(제17조)
- 특별 현안사항 추진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
-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가. 동의안의 개요

○ 회장의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을 위해 수석부회장직을 신설하고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하는 등,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"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"의 규약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동의안의 제출 배경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"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" 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. 법 규정에 따라 규약 개정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동의안의 주요내용

○ 안 제5조에 회장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을 위한 수

석부회장 직을 신설하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 회장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내용을 추가함.

○ 안 제6조의 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 조항을 삭제하였고, 안 제8조에 회의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함.

○ 안 제14조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지위를 상승하였고, 안 제17조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특별 현안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라. 종합의견

○ 본 동의안은 회장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 대행을 위해 수석부회장을 신설하고, 특별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, "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" 운영규약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규약 안에 대한 동의안으로 「지방자치법」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규약 개정 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제출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